

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3. 4. 24(수)
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문희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3년 4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4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4월 16일

(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 문 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타기관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등록금 총액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,
- 군입대,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휴학의 경우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에서 제외토록 하여, 의용소방대원의 복리증진 및 사기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장학생의 선발기준 완화 (안 제4조)
-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중 단서조항 신설 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문 홍 열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현재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액이 대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을 충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,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의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,
- 군입대와 부상,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모범대원의 자녀 및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의 학업 장려를 위해 등록금 지급중단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장학금은 상위법령인 「소방기본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어,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- 입법예고(“13. 3. 12. ~ 4. 1.)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해석상의

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
- 조문의 내용은 '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제출되었으므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, 타 분야 장학금을 지급받는 때에도 등록금 전액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, 고등학생은 3년 이내, 대학생은 4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 다만, 지급 대상자가 없을 경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 중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개시후 2월이내”를 “시작 후 2개월 이내”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학기 중 군입대 또는 부상,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휴학의 경우, 해당 학기는 지급정지사유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지급의 정지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----- ----- <단서 신설>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지급의 정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, 다만, 학기 중 군입대 또는 부상,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휴학의 경우, 해당 학기는 지급정지사유에서 제외한다.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참 고 자 료

□ 한국장학재단 “장학금 이중(중복)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”

- 국가장학금(I, II유형)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이중지원 범위에 있어,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함